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

2018. 10. 5.

보건복지부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개선 방안 ····· 2

(1) 위원 전문성 확보 ····· 2
(2) 위원회 상시 운영 ····· 3
(3) 소위원회 체계 구축 ····· 4
(4) 위원 권한 및 독립성 강화 ····· 5
(5) 위원 책임성 담보 ····· 5

Ⅲ.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논의 결과 ···· 6

Ⅳ. 향후 계획 ····· 8

[붙임]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(초안)

Ⅰ. 추진 배경

□ 당초 **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정과제***로서 **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**하였으나,

*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권한 강화,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내역 공시 강화 등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추진

○ **과거 국회 논의과정*** 등을 감안할 때 **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**될 것으로 예상

* 체계개편 관련 법률안은 16~19대 국회('03~'16) 내 총 17회 발의(정부안 4회 포함) 되었으나,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

○ 이러한 경우 상당 기간 동안 **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**할 수밖에 없어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**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못함**

□ 한편,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**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와 더불어**

○ 올해 상반기 **낮은 기금수익률, 본부장의 장기 공석 등**도 이슈화 되면서 **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장기수익률 제고 필요성도 더욱 부각**

* (한겨레, 8.22) 국민연금 '불신' 높은데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지지부진
* (세계일보, 8.18) 국민연금, 가입자 부담만 늘리고 운용은 왜 정상화 안하나

□ 이러한 **제반여건을 고려**할 때 **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일환**으로 **현행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**할 필요가 있어

○ 법률 개정보다 우선 **하위법령 및 지침을 개정**하는 방안이 **불가피**

※ 제4차 기금운용발전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금운용이 시급하므로 법 개정 전 제도 개선을 통한 체계 개편을 제안

○ 또한 **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**과 재정추계에 따른 **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**하여 **국민들의 신뢰 향상 기대**

Ⅱ. 개선 방안: 기금운용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

◇ **전문성 갖춘 위원**들이 기금운용 **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**하고 **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** → 기금위의 **실질적 권한 및 독립성 강화**

1 위원 전문성 확보 (시행령 개정)

○ **(자격요건 신설) 금융·경제·자산운용·법률·사회복지** 등 **3년 이상 경력자**로 기금위 위촉직 위원 **자격 신설**

- 국민연금법 제103조제7항에 따라 **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**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규정

< 자격요건 세부 내용 >

○ 대학에서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**조교수 이상의 직(職)에 3년 이상 재직**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분야의 **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**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○ **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**로서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**업무를 3년 이상 담당**한 사람

※ 상기 3개 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

2 위원회 상시 운영 (시행령·지침 개정)

○ **(상근위원)** 기금위 상설화를 위한 **상임위원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**하므로, 대신 **상근위원**을 두어 **위원회 상설화 효과 기대**

※ (참고 조문)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(사무기구) ② 사무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.
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.

- **(규모) 상근위원은 3명**으로 하여 각각 기금위 산하 **소위원회 3개를 전담**(소위 위원장)하도록 하고, 나머지 **2개 소위에는 위원으로 참여**

※ 상근위원 규모는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

- **(위촉절차)** 가입자단체 위원(사용자3, 근로자3, 지역가입자6) 중 **유형별로 각 1명씩 추천*** → 위원추천위원회 **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**

* 각 가입자단체 간 협의를 거쳐 추천

- **(보수수준)** 기금위 당연직 위원이 차관급임을 감안, **정무직공무원**(차관급)**보수에 준하여 지급 검토**(연봉 1억2천만원 수준)

※ 구체적 금액은 기재부 협의 등을 통한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

- **(신분)**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**민간 신분 유지**(계약직)

○ **(회의 정례화) 월 1회 정례화* 및 수시회의 개최**

* (예시)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찬회의(08시) 개최 원칙

○ **(위원회 안건 구체화) 기금운용 정책 수립, 기금운용본부 감독** 등 기금위 의결사항을 **명확히 규정**

-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**투자전략,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 점검 등**

※ 단, 실제 투자결정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 수행(기금위 및 소위 개입 불가)

- 기금운용본부의 **조직·인력 등 운영 관련 사항**

○ **(사무기구)** 원활한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**복지부에 사무기구 설치**

- **사무기구의 장은** 복지부장관(운용위원회 위원장)이 지명, **사무기구를 총괄하고 기금위 간사 역할 수행**

- **3개 소위 운영을 지원**하기 위한 **전담부서 3개**(정책,운용,평가) 설치

* 사무기구는 공무원·민간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

3 소위원회 체계 구축 (시행령·지침 개정)

○ **(3개 소위 설치) 투자정책, 수탁자책임,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**로 **구성**하고,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**현행 전문위원회는 폐지**

* **(현재)** 투자정책, 의결권행사,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(기금운용지침) → **(변경)** 투자정책, 수탁자책임(책임투자 포함),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(시행령)

- **소위는** 기금운용 관련 **모든 안건·정책·현안을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***하고**, 회의도 정례화**(최소 월1회 이상)

* 수탁자책임소위의 중요한 주주권(의결권) 행사는 소위 결정 후 공개(기금위 의결 간주)

○ **(회의록 작성) 소위원회도 현행 기금위 회의록 작성·공개기준* 준용**

* 회의록 원본 1년 후 공개(민감사항은 4년), 요약본은 신속 공개

○ **(위원 구성)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소위는 9명, 성과평가보상소위**는 **6명**

- 소위 위원은 **전원 기금위 위촉직 위원만으로 구성** (외부위원 無)

- **상근위원**(3명)은 각각 **소위원회 위원장을 전담하고 나머지 2개 소위 참여, 비상근위원**(11명)**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 참여**

- **소위 위원장 임명** 및 **소위원회 구성**은 **기금위에서 의결**

< 실무평가위원회-소위원회 간 관계 >

◇ **실무평가위원회가 존치**함에 따라, **기금위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 체계 구축** 시 **실평위 역할이 모호**하게 될 우려

☞ 소위 안건을 **실평위에 보고**하고, **실평위 위원 의견을 수렴**하여 **기금위에 전달**하는 방식으로 운영(현행 방식과 유사)

④ **위원 권한 및 독립성 강화** (시행령 개정)

○ **(안건 부의권)** 기금위 **안건 부의권한 부여**(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동의)

- 위원들이 **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**은 **기금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**할 수 있도록 개선 → **위원의 직접 참여 활성화**

○ **(위촉 공정성 확보)** 가입자 단체 추천(5~10명)*으로 **별도의 '위원추천위원회'를 구성하여 기금위 위원 위촉 심사 전담**

* (예시) 사용자2, 근로자2, 지역가입자2, 전문가3

*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장이 지명

- 각 단체에서 **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** → **위원 추천위원회 심사·추천** → 복지부장관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위촉

- 추천위원회 **심사절차를 거친 자는 별도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**하여, **기금위 위원의 자율성·독립성 확보**

⑤ **위원 책임성 담보** (지침 개정)

○ **(책임 강화) 윤리적·도덕적 책임**(선관주의, 신의성실의무 등)**을 지침에 구체화**하고, **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**하여 실효성 확보

- 다만 신분보장,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,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**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**으로 **법률 개정 필수 → 추후 검토**

○ **(정보 공개 강화)** 위원회 활동내용을 담은 **연차보고서 작성·공개**를 통해 위원들의 **활동에 대한 책임도 간접적으로 담보**

Ⅲ.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(10.2) 논의 결과

□ **추진 방식**(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) **관련**

○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, **국회 논의·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 추진**이 바람직

- 위원 자격요건 등 **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선출 관련 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**

○ **법률 개정사항과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구별**하여, **동시에 개정 추진**(Two-Track)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

□ **위원 전문성 강화** 관련

○ **전문성 강화 취지는 공감**하나,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볼 때 **위원 자격요건은** 시행령이 아닌 **법률에 규정할 필요**

- 실평위 위원 자격은 법률에 있는데, 상위 기관인 기금위 자격 기준을 **시행령에 두는 것은 체계 상 맞지 않음**

○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**현재 검토 중인 자격요건보다 강화된 기준*** 검토 필요

* (예시) 경력기준 강화(3년→7년), 사회복지 전문가는 제외 등

○ 위원 전문성만 강조하다보면, 기금위의 **대표성이 훼손될 우려**가 있으므로 **대표성도 같이 확보**하는 방안 검토 필요

□ **상근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** 관련

○ 위원회 상시 운영을 위해서는 **상근위원의 역할이 중요**하므로 **그에 부합하는 근무환경**(전담 사무공간 등) **및 보수수준 필요**

○ 사무기구 **설치 필요성은 인정**되나, 복지부 설치 및 사무기구의 장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**정부의 영향력 강화로 비춰질 우려**

- 실제 사무기구를 구성(사무기구의 장 임명 등)할 때 정부로부터의 **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** 필요

□ **실평위 - 소위 간 관계**

○ 소위원회 체계를 구축할 경우 법률 상 규정된 실평위 역할이 축소될 것이므로, **법률 개정을 통해 실평위를 폐지**할 필요

○ 만약 법 개정이 어렵다면, **위원회 간 역할 및 관계를 재정립**(역할 분담 등)할 필요

- 실평위는 **중요한 안건 중심으로 논의**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

○ 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므로, **소위원회 구성*도 공정하게 추진 필요**

* 특정 소위 선호에 따른 상근위원의 담당 소위 결정 등

□ **기타 의견**

○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금운용위원회뿐만 아니라 **기금운용본부의 역량 및 독립성을 강화**하는 것도 중요

Ⅳ. 향후 계획

□ **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**

○ **개정(초안) 기금위 보고** 등 의견 수렴 후 **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**(안) **마련**

○ 국민연금법 시행령 **입법예고**(40일) 및 **관계부처 협의**

○ 국무조정실 **규제심사** 및 **법제처 심사**

○ **차관·국무회의 의결·공포**

*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과정에서 내용 및 일정 변동 가능
* 위원 위촉·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개정된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서 시행

□ **지침**(기금운용지침 및 운영규정 등) **개정**

○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시점과 맞추어 **기금위 의결 후 시행**

붙임 |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(초안)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 설>	제77조(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. 1. 기금투자 기준과 전략 등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2.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.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(이하 “기금운용본부”라 한다)의 조직·인력 등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. 기금운용 내용 및 성과 등 월별 운용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. 위원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는 사항 6.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 사항
<신 설>	제77조의3(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)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은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(職)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.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, 경제, 자산운용, 법률, 사회복지 등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하되, 사용자·근로자·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을 위촉한다. ③ 위촉직 위원(상근위원을 포함한다)은 제4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·추천을 거쳐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 ④ 위촉직 위원을 심사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위원 중 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5~10명으로 위원추천위원회

	를 구성하되, 각 가입자 대표 및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한다. ⑤ 그 밖에 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78조(운용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생략)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	제78조(운용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제78조의4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.
<신 설>	제78조의2(소위원회 설치) ①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. 1. 투자정책 2.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법 제 102조 제4항에 따른 투자(이하 “책임투자”라 한다) 3. 성과평가 및 보상 ② “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소위원회”(이하 “투자정책소위원회“라 한다)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 1.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. 주요 투자 및 기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3.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. 기금운용 현황 점검 및 정책반영

	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투자정책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으로 운용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,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“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”(이하 “수탁자책임소위원회”라 한다)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탁자책임소위원회가 의결한다. 1.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원칙,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.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에 관한 사항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관련 사항 가. 공단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소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 나. 수탁자책임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다. 그 밖에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사항 4. 책임투자 관련 사항 5.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

	와 책임투자 관련 사항으로 운용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“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”(이하 “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”라 한다)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평가, 성과보상, 정책환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 1. 국민연금기금운용 내·외부 성과평가 보고서 2.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·보상에 관한 조사연구·정책개발·제언 3. 중장기 또는 연간 투자정책 및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4.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평가, 성과보상, 정책환류와 관련된 사항으로 운용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,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
<신 설>	제78조의3(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각 소위원회는 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소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. 1. 투자정책소위원회: 9명(상근위원 1명, 비상근 위원 8명) 2. 수탁자책임소위원회: 9명(상근위원 1명, 비상근 위원 8명)

	3.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: 6명(상근위원 1명, 비상근 위원 5명)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되,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위원이 된다.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·심의·의결한 사항을 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, 운용위원회가 최종 심의·의결(제7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제외한다)한다. 다만, 운용위원장 및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·평가를 받아야 한다.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·공개하여야 하며, 회의록 내용 및 공개 시기·방법 등은 법 제103조의2를 준용한다. ⑤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<신 설>	제78조의4(사무기구) ① 운용위원회, 실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(이하 ‘위원회 등’이라 한다)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기구를 둔다. 1. 위원회 등의 운영 및 안건의 작성·관리 2. 위원회 등 위원의 보좌

	3.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조사·연구 기획 4. 기금운용본부 관리·감독 5. 기타 위원회 등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기구의 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. ③ 사무기구의 장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제78조(운용위원회 위원의 수당)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78조(운용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) 운용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